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 안 번 호 256 발의연월일 : 2020. 6. 4(목)

발 의 자: 지광천 의원

찬 성 자 : 이주웅, 박찬원

심현정, 전수일 이명순 의원

1. 주 문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「2019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」,「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」,「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」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O 심사기간은 2020년 6월 12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○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「2019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」, 「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」,「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」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- ○「지방자치법」제56조
- O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제2조

심 사 계 획

1. 활동목적

-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
- O 신속한 의사진행 및 의결기관의 역할 강화

2. 심사안건

-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19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
-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
- 2019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

3. 활동기간

○ 2020년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한다.

4. 구 성

O 이주웅 의원, 박찬원 의원, 지광천 의원, 심현정 의원, 전수일 의원, 이명순 의원

5. 운영계획

| 일 시 | 차 수 | 내 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|
| 6.12 (수) (10:00) | 제1차 예결특위 | 1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2019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.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5. 201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의 건 | |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

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- 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「지방자치법」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"본회의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-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하다.
 - 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 -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